

□ 개요

○ (개념) 기업·국민 누구나 규제애로를 직접 건의하면,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는 온라인 방식의 범정부 규제건의창구

※ 검색엔진에서 “규제개혁신문고”로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.sinmungo.go.kr로 접속

○ (근거)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(규제 정비의 요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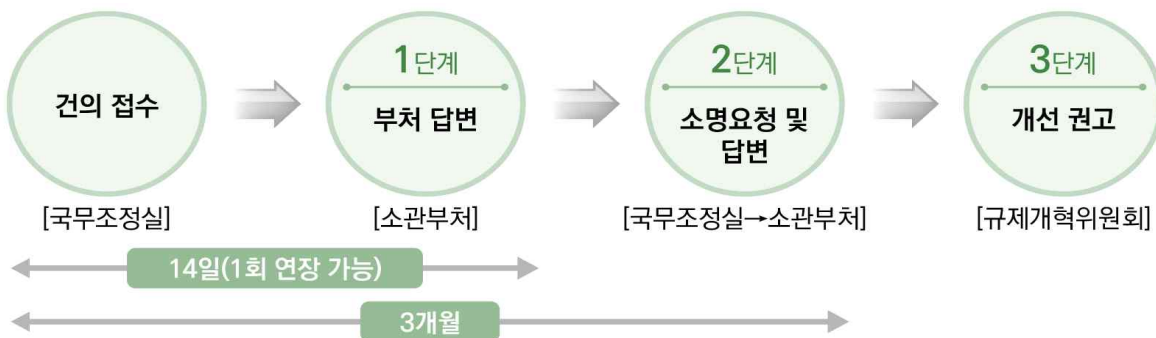


PC 접속 화면

모바일 접속 화면

<규제개혁신문고 초기화면>

□ 처리절차



✓ 부처답변이 '불수용', '증장기검토'인 과제 중, 규제심판부 상정과제로 선정될 경우 규제심판절차에 따라 처리

○ (건의접수) 기업·단체·지자체 등 누구나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규제의 합리성·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

- (부처답변)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**14일 이내**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한 **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**
 - * 답변 유형 : △수용·일부수용 △중장기검토(6개월 이내 재답변) △불수용 △기시행
- (소명) '합리적 측면'이 있음에도 불수용된 건의 소명요청(국조실) → **접수일 3개월 내** 규제준치 필요 등을 **원점에서 재검토·답변**(소관부처)
 - * 소명 유형 : △규제개선 △규제준치 △대안제시
- (개선권고) 건의과제의 파급효과 및 소명의 타당성, 여론 등을 **종합 검토**, 필요시 **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**(규제개혁위원회)

□ 최근 주요 개선 사례

1 왕겨·쌀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환경부

현황 쌀 도정과정의 부산물인 왕겨·쌀겨는 일반적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여 엄격한 규제 적용

→ 그간 현장에서는 폐기물로 인식되지 않아 규제 미준수에 따른 **피고발 사례** 빈번(농민, 미곡처리장 등)



개선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고 재활용 필요성을 고려, **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완화된 규제 적용(폐기물에서 제외)**

| 기존(사업장폐기물) | 개선(순환자원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| 해당규제 면제 |
| ② 폐기물 인수·인계서 작성 | 해당규제 면제 |
| ③ 활용용도 제한(사료·비료) | 활용용도 확대(모든 용도) |

→ 농민 등 **현장불편 해소** 및 **농업부산물의 판로 확대** 기대

☞ 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'22.12)

2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 허용 추진 환경부

현황 하천구역 안에서는 일체의 '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 행위'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 금지

→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증가에 맞추어 지자체 중심으로 하천주변 반려동물을 소규모 놀이터 등 관련시설 설치를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규제로 설치 곤란



개선 하천점용 허가를 금하고 있는 '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'에서 '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행위'는 제외하도록 개선

→ 하천구역 안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반려동물(반려견)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 등 활성화 기대

☞ 「하천법」 개정('23.12.)

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'연구공간 상시근무 규제' 합리화 과기부

현황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정부지원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이 해당 연구공간 내 상시근무해야 가능 (생산·영업 등 연구 외 업무 겸직제한 목적)

* 기초연구법 근거, 전국 약 7.6만개 인정(과기부 자료)



→ △ S/W 연구 등 집합근무 형태가 불필요한 업종 등장 △ 원격 근무지원 기술 발달에 따라 해당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현장지적 존재

개선 연구전담요원의 재택근무 등 공간제약 없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인정 기업부설연구소의 '연구공간 내 상시근무 규제' 합리화

→ 최근 연구분야 근무형태와 과학기술 진전을 반영해 규제 현실화 기대

☞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2.12)

4 항만배후단지에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입주 허용 해수부

현황 1종 항만배후단지*에 주유소(유류판매업)는 입주 가능하나,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(전기판매업·수소충전업)은 입주 불가



→ 전기·수소차 등 장래 급증할 친환경 운송수단 수요에 적극 대응 곤란

*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(유통시설 등)과 항만친수시설(레저, 교육시설 등)을 집단적으로 설치·육성하기 위한 배후단지(현재 부산, 인천 등 8개)

개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주유소처럼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이 입주 가능토록 개선 (입주가능업종에 전기판매업·수소충전업 추가)

→ 항만배후단지에 전기·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 활성화 인프라 확충 기대

☞ 「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」 개정('22.10)

5 '액화석유가스(LPG) 충전시설'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제주도

현황 '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'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상위법령*에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제주도 조례에 미반영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신규시설이 불가



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※ 제주의 경우, 제주특별법 특례에 의하여 도 조례에 정함

→ 신규 도내 충전업체 진입이 어려워 기존업체(4개사)에 의한 도내 LPG 과점에 따른 시장가격 교란 가능성 제기

개선 타 지역과 동일하게 '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'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

→ 실제로 신규 도내 충전업체 진입이 가능해져 LPG가격교란 부작용 해소 기대 (도민들 대상 LPG 가격부담 완화)

☞ 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」 개정('22.6)

6 지역주민 시설 등을 위한 폐교활용 규제 합리화 교육부

현황 국가지자체가 폐교를 공공목적 위해 무상대부하거나 매수하려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폐교활용 규제*가 동일하게 적용



* (무상대부) 5년↑미활용+3회↑유찰
(용도변경) 10년간 금지

→ 국가지자체가 폐교를 주민시설 편의 등 목적으로 즉시 무상대부 또는 용도변경을 통한 활용 곤란

개선 국가지자체가 폐교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해당 규제 예외 적용*토록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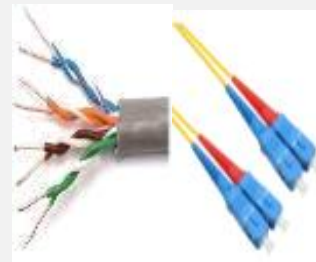
* (무상대부) 5년↑미활용+3회↑유찰→즉시
(용도변경) 10년간 금지→가능

→ 폐교를 지역주민 시설 등 공공목적 위한 활용 활성화 예상

☞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('22.12)

7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대상 광케이블 의무화 추진 과기부

현황 건설사는 신축건축물 건축 시 일정개수 이상의 통신 회선(꼬임 또는 광섬유케이블)* 구축 의무('통신회선 최소규제')



<꼬임 및 광섬유 케이블>

| 구분(선택) | 통신회선 최소규제 | 최대속도 | 상대가격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꼬임 | 1회선 이상 | 1기가 | 저가 |
| 광섬유 | 2코어 이상 | 10기가↑ | 고가 |

→ 가격 저렴한 꼬임케이블이 대부분 설치되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

개선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을 전제로, 꼬임케이블과 별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위한 광섬유 케이블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설치토록 개선 추진

→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초연결 인프라 고도화 기여

☞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개정('22.12)

8 농어촌도로 하수관로 시설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추진 환경부

현황 도로법에 의한 도로*의 하수관로 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나,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평가대상에 포함



* 고속도로, 일반국도, 특별시도, 지방도 시·군·구도

→ 유사 개발행위임에도 근거 법률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규제 형평성 침해 및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

개선 현황조사 등 결과를 전제로 농어촌도로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하수관로 시설 개발행위와 동일하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추진

→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적·재정적 부담 경감

☞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개정('22.12)

9 단체표준 제·개정 요건(이해관계인 합의) 규제합리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

현황 단체표준* 제·개정 시 ①타 표준과의 중복성이 없으며, ②이해관계인 간 '합의'가 필요하지만, 해당 '합의'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가 불명확



* 조합·비영리법인 등이 공공안전 등을 위해 정한 단체 내부의 민간표준

→ 단체표준 제·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합의 과정에서 일부 협·단체 등이 반대시 원활한 제·개정이 어려운 실정(신기술 등에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우려)

개선 단체표준 제·개정 시 요건 중 '이해관계인 간 합의'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명확화

→ 단체표준 제·개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(신기술 등의 표준등록 원활화)

☞ 「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(국표원 고시)」 개정('22.3)